

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'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'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4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('15.6.28.)에 따라 인천시에 지원하기로 한 제2외곽순환도로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 40,900백만원이 '15. 9.~11월까지 세입 처리되어 '15년도 일반회계 결산 후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입됨에 따라

나. '16년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〈수입 및 지출 내역〉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항목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	항목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B-A)
합계	20,000	60,900	40,900	합계	20,000	60,900	40,900
기타회계 전입금	20,000	60,900	40,900	자치단체등 이전	20,000	60,900	40,900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 고안자 (☎ 2133-3676)